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0. 12.

발 의 자 : 임춘구, 김태근, 강승수,
김성현, 김재상, 김정곤,
김정미, 박교상, 박주연,
윤종호, 이수태

1. 제안이유

- 가. 상수도 미 인입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 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인입 기피
- 나.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비 차등이 발생하여 행정 불신 및 주민 위화감 조성
- 다. 따라서 급수공사 신청 시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정액공사비 적용으로 비용 부담경감 및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수도물을 사용토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수도 미 인입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 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상수도 인입을 기피하고 있어 급수공사비 대지경계 까지 200m이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나. 구경 15mm이하 급수 신청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액 급수공사비 실시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

나. 예산조치 : 상수도 미 인입지역의 급수공사비를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 범위 내 일반회계에서 지원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조례안 : 붙임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는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제49조 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금액 및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축건물 및 개조 신청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매년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정액제 급수공사비 대상은 급수신청구경 15mm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 설비의 수선 또는 제49조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한다. 다만,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 급수공사는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계량기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 ③ (생략) <신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금액 및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축건물 및 개조 신청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정액제 급수공사비는 매년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정액제 급수공사비 대상은 급수 신청구경 15mm 이하로 한다.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명

의 원 명	서 명(날인)	비 고
임 호우	임호우	
김재근	김재근	
김 정아	김정아	
김 재 상	김재상	
이 수 재	이수재	
박 근 성	박근성	
전 경 재	전경재	
강 승 수	강승수	
김 정 국	김정국	
박 주 현	박주현	
김 성 현	김성현	